

## 한국양육업의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김 유 열  
농수축산신문기자

**한** 국양육업을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으로 평할 수 있을까.

한국양육업의 현주소가 「사슴사육업」과 「양육산업」의 중간지점에 있다는데 크게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양육업은 녹용·녹혈생산, 사슴분양을 주 특징으로하고 있다. 국내 양육업에서 사슴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양육업이 산업화의 초보단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양육업은 일반농가가 대거 참여하기 시작함에 따라 산업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귀족산업, 사치산업으로 치부되던 양육업이 일반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양육업은 일반축산업으로 받아들이기엔 많은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같은 취약성을 갖는데는 여러 원인들이 있다. 한국양육업의 축산업으로서의 취약성을 열거할 생각은 없다.

양육업이 생산·판매·가공 유통등을 일괄하는 완결구조를 갖고 있는 양육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기본 능력에 대해 살펴보고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을 따름이다. 사슴사육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 생산자 단체, 생산자 등 3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양육업에 대한 녹용·녹혈 소비자들의 기본인식도 전제 돼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여기서는 국내 양육업의 발전속 가운데 정부정책면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그동안 국내 양육업은 축산정책 가운데서도 크게 소외돼 왔다. 그 발전가능성과 자연적 발전 속도에 비해서 양육정책은 「정책」이란 말을 붙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소외돼 왔다.

한국양육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총 사슴사육두수가 12만두에 달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협회는 사슴증식율을 연 26% 정도로 잡고 앞으로 10년후인 2천년에는 사슴사육두수가 1백만두 가까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우·돼지·닭 사육수가 최근 몇년간 정체, 또는 감소, 둔화추세에 있는 현상과 비교할 때 사슴사육두수증가율은 경이적이라할 수 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란 먹구름 속에서도 국내 양육업은 질적, 양적 성장을 해왔던것은 사실이다. 영세농가들이 양육업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국내 양육업의 질적 발전을 설명해 준다면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 왔다는 것은 양

적 발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양육정책은 「정체」  
돼 왔다. 80년 이후 10년 이상 동안 양육  
정책이라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다. 사슴이 정부관계자들 가  
운데 수입대체작목으로 회자 됐지만 정책  
면에서는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었다.

뉴질랜드에는 이미 「양육규정 및 사슴  
수렵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사슴 인공  
사육 및 생산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 양육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캐나다  
사스콰치완주도 특히 양육 관계규정을 제  
정, 사슴사육부터 녹용·녹용생산, 판매  
가공지도까지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육우·곡물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  
다고 인식하고 농업경영다각화 측면에서 신  
중산업으로 양육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양육업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할 일은 법률적으로  
양육업을 보호·육성하는 일이다. 벌써 부  
터 양육농가들은 (가칭) 「양육진흥법」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한낱 독백으로만 취급해왔다.

한국이 이미 세계 녹용시장의 80%를 차  
지하고 사육두수나 사육기술면에서 상당히  
앞선 나라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관계법  
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  
가 「양육진흥법」과 같은 양육 독자입법이  
불가능하다면 기타 유망가축을 대상으로한  
법률제정도 검토해 볼만 하다.

양육업은 법률적으로 보호 육성되기는  
커녕 법에 의해 피해를 입게됐다. 최근 동  
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양육농가들은 불안  
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슴 절각시 채혈

행위가 동물학대행위로 간주, 농가들이 선  
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  
실 국내 양육업은 녹혈 채취판매를 통해  
유지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녹혈판매  
수입이 농가 전체 소득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설령 사슴시장이 개방된다 해도 녹  
혈로 인한 수입엔 큰 변화가 없을듯 싶다.  
따라서 정부는 녹혈채취행위를 제한규정을  
뒤 건전한 생산 활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생녹용이 축산물로 법률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축산법 제2조 3항은 축산물을 가축  
에서 생산된 육·유·란·꿀과 이들의 가  
공품, 원피·원모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  
하는 가축의 생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축  
산법 시행규칙은 사슴을 가축으로 분류해  
놓고 있으나 그 생산물인 녹용이나 녹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모범상 원  
모피·원피 등을 축산물로 분류하는 아랑  
을 배풀면서도 한창 발전일로에 있는 양육  
업의 녹용·녹혈에 대한 일언발구의 규정  
이 없는 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다.

이처럼 생녹용이 축산물로 규정되지 않  
음으로써 나오는 폐단이 있다. 고가한약재  
로만 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돼온 생녹용  
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소  
세법은 생녹용 뿐만 아니라 건녹용에 대해  
서도 특소세 10%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가공하지 않은 축산물에 특소세가 부과되  
는 것은 녹용밖에 없을 것이다. 특소세법  
은 로열젤리의 경우 축산물로 인정, 가공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  
고 있다. 한때 여우·밍크 원피에 대해서  
도 특소세가 부과됐으나 최근엔 면세 됐

다. 최근에는 공장도 가격 1백만원이상의 가공 모피제품에 한정해서만 60%이내에서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녹용의 경우도 특소세를 부과하려면 생녹용은 제외하고 가공녹용·건조녹용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상에도 사슴 및 그 생산물을 흡수 당하고 있다.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수축의 범위에서 사슴을 제외시키고 사슴생산물인 녹용·녹육·녹혈 등을 축산물로 규정하지 않았다. 사슴 사육두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다량의 사슴고기, 녹용이 생산될 전망이다. 위생적으로 이것들을 생산,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슴을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주축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생산물을 축산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사슴고기는 일부 흑염소 가공업소에서 증탕원료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사슴 도축·검사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필요하다. 또 위생적인 녹용절각요령도 축산물위생 처리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사슴을 가축으로 규정, 만약의 질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슴의 경우 우려할 만한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녹용 수입은 매년 늘고 녹용수입과정에 외래질병이 유입될 수도 있다. 현재 검역상 이에 대해 대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사슴을 가축으로 분류함으로써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등에서 사슴질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양록농가들은 벌써부터 양록업을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적 축산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농림수산부 및 재무부에 건의해 왔다. 젓소·소·돼지를 비롯 심지어 면양, 토끼, 오리 등의 축종조차 농가부업적 축산범위에 포함,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가축두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시켜주고 있다. 양록농가들은 생산자 단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산양·면양·오리등에 대해 농가부업적 축산범위로 인정해 주면서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록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만 해도 두개씩이나 되고 양록분야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내 양록업이 사치산업에서 일반축산업으로 전환되어가고 있고 양록업에 일반영세 경종농가들의 신규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농가부업적 축산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양록협회는 진작에 꽃사슴 40두, 레드디어 20두, 엘크 10두를, 사슴 농가부업적 축산범위로 정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양록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는 농장조성 문제다. 사슴이 생리적으로 조사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넓은 방목지를 필요로 한다. 특히 풍부한 산야초나뭇잎이 있는곳이면 더욱 좋다. 국내만큼 산림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축농가들의 산림이용은 산림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관계 당국의 산림훼손허가를 얻어내야만 산림 내에서 사슴을 키울 수 있다. 산림관계당국은 89년에 19건, 90년에 23건에 대해 사슴사육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내주었다. 양록농가들은 사슴 임간방목을 바라고 있다. 사슴

을 산림에서 방목할 경우 캐나다, 뉴질랜드 수준으로 생산비를 낮출수 있다는 것이다.

양육업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서도 타 축산업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축협법 시행령은 지역조합 조합원자격을 사슴 5두이상 사육자, 업종별조합 조합원자격을 사슴 10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슴은 품종별로 생산능력면이나 가격면에서 차이가 현격하다. 엘크 값은 거의 꽃사슴 시세의 10배정도 된다. 이처럼 품종별로 차이가 현격함에도 불구하고, 축협법에서 품종 구분없이 조합원자격 두수를 정한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양육농가들은 한국양육업협동조합에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이 규정을 세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사슴 사육두수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부는 1년에 한 번정도 행정조사를 통해 사슴 사육두수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행정조사는 내무부 조직, 즉 동사무소·면사무소·읍사무소·군청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차의 개안성이 높다.

한국양육협회는 89년말 기준 국내 사슴 총사육두수를 8만 9천두수정도로 추정해왔다. 이에 반해 농림수산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89년 말 현재 사슴 사육두수가 4만 5천 3백78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사슴사육두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양육정책

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을 아이러니다. 사슴을 비롯해 산양, 꿩등의 유망축종은 농림수산부가 산하기관인 농수통계사무소를 통해 사육두수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야 정부는 사슴증식상황, 녹용 수급상황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자주거론 되던 사슴 생축 수입문제도 국내 사슴 사육동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법적지원외에 사슴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양육업이 해가 다르게 번창해가는데 국내에 사슴을 연구하는 전문가 한 사람 제대로 없다.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국립종축원, 축산관련 대학 등 어느 한 곳에서도 사슴을 제대로 연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축산시험장이 사슴 10두를 확보, 시험연구에 착수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것도 소를 전공한 이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제 노력이 선행 될 때에 한국양육업은 영개성과 취약성을 벗어나 「산업」의 면모를 갖추고 외국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조그마한 노력으로도 한국양육업이 발전할 잠재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슴수입 개방하면 우리양육 끝장난다!**